

석유정제업 [] 변경등록신청서
[] 변 경 신 고 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(신고인)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등록 14일 신고 4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

신청인 (신고인)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
	상호	전화번호
	소재지	

신청 (신고) 내용	변경내용 [] 성명 또는 상호 [] 대표자 [] 석유저장시설(소재지·규모) [] 석유정제시설(소재지·정제능력)
	변경 전
	변경 후
	변경사유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5조·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·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정제업 []변경등록신청 []변경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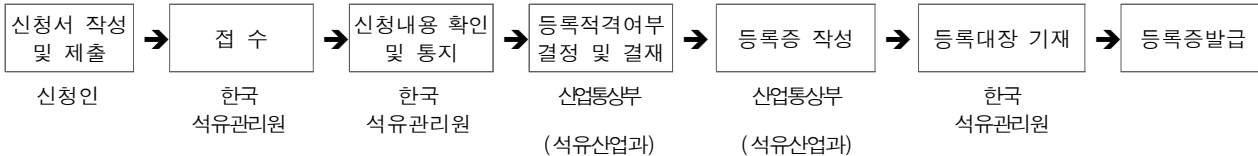
신청인(신고인) (서명 또는 인)

한국석유관리원 귀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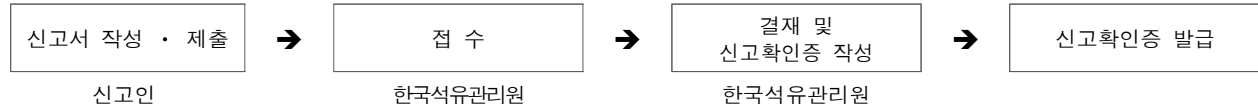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	수수료
1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7조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제7조제2호 또는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 음

처리절차

<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>



< 변경신고의 경우 >



1.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3조,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, 제17조,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(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)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.

처분받은 날	행정처분 내용	행정처분 사유

적발일	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	진행 중인 내용

- 1)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"없음"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.
- 2) 양도·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.

2.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[illegible]